제192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6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32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2013 ~ 3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 ~ 3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2013 ~ 35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3 ~ 36	거창군 기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3 ~ 39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	~	32
	2013	2013 ~

제를	출연됩	일일	2013. 5. 13.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O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로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나. 근로사업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다. 위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근로장애인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운영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자. 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장애인복지법」제58조·제5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별표 4, 별표 5

- (2)「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 나. 예산조치 : 50.000천원(2013년 1회 추경시 확보)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4. 02. ~ 4.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재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하 "근로사업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에 소재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근로사업장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
-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근로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에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① 근로사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 ② 근로사업장의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장애인 중 6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근로사업장의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근로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근로사업장 운영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3. 근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② 시설운영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다.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 2. 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운영신청서

	거창군 장약	애인 근로	사업	장 우]탁원	2 영 신	······································	서
	법 인 명			전화	번호			
신	소 재 지							
청 인	대표자 성명			법인	번호			
Ľ	설 립 일			회원수 수 용				
신	운영목적							
청	운영(갱신)기간	년	월 '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항	주요사업내용							
	자 산 상 황							
연간예산액		계	자투	나담	上.	조금		그 밖에
	(천원)							
	그 밖의 사 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명:

주 소:

대표자: (인)

거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별지작성)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운영의 위탁)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a)	군비	50	-	-	-	300	350
세입 (b)	이자 및 기타수익	-	-	-	-	-	-
총비	용(a-b)	50	-	-	-	300	350

3. 관련 의견

○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거창군 소유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므로 시설 유지 관리필요

○ 2013년 : 건축중인 장애인 근로사업장 공장건축비 부족분 임

○ 2017년 : 사업정착에 따른 공장증축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이며, 이때는 경상남도 및 복권기금사업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송 재 명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버ㅎ	2013 ~ 33
먼오	

제출일자	2013. 5.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우리 군민이 쉽게 잘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순화함(안 제5조제3호, 안 제7조제2호)

-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
- ⇒ 사회정의에 앞장서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
- 기타 ⇒ 그 밖의
- 나. 중복되는 용어를 변경함(안 제7조제1호)
 - 경진회 ⇒ 발표회
 - ※ 기타 경진대회(같은 조 제2호)와 중복표현
- 다. 행정기구 표현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 산하기관장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2013년 본예산 확보(25,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1. ~ 4. 2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3조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정의에 앞장서거나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제6조 중 "대외적"을 "대외적으로"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진회"를 "발표 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산하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u> 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군</u>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u>행한다.</u>	제3조(포상권자) <u>한다.</u>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u>각호</u> 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 (생 략) 3. <u>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u> <u>에 솔선수범한 경우</u>	제5조(표창장) <u>각 호</u> 1. ~ 2. (현행과 같음) 3. <u>사회정의에 앞장서거나 미풍양속의</u> 계승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u>대외적</u>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 한다.	제6조(감사장) <u>대외적으로</u>
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u>각 호</u> 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u>발표회</u> , 전시회 등에입선한 경우 2 <u>그 밖의</u> 3.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 (포상절차) ①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8조제2항(포상방법 및 부상)

: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행정과장 정 삼 영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34

제를	출연됩	일일	2013. 5.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수탁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함(안 제6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대상기관 선정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관하여 심의
 - 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나.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7조)
- 다.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11조)
- 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4.8. ~ 2013.4.28.
 -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제3항 (구체화 요청) - 당초: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 의견: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반영
재무과	○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 (추가항목 요청) - 민간위탁에 대한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다"	따라서, 거창군 공유재산	미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군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을 "그 밖에 시설관리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으로 "한다."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의원인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

- 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 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

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에 따라 군수
① (생 략) 1. ~ 3. (생 략) 4. <u>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u>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u>각호의 1에 해당되는</u>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③ 군수는 제1항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u>국가위</u> 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 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u>한다</u>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u>범위내에서</u>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 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 시하여 공고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u>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 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1	O

개 젔 아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직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 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 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 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의 심의에서 제척되다.

-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 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 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의원인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 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 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회피할 수 있다.

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 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 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 을 진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 을 진다.

혅 햀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9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 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 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 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탁내용. 위·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 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 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야 한다. 명할 수 있다.

-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아니 된다.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 정 아

하다.

증읔 하여야 한다.

-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

-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무펴라) ① 스타기과으 스타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기부채 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 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 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 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 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 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 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 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35

제출일자 2013. 5.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2013.1.1)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 하는 법조문·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군지역과 관련이 없는 조항 삭제함(안 제13조)
 - 중과대상지역 삭제함
- 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를 정비함(안 제14조, 제15조)
 - 과세특례 ⇒ 도시지역분
-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변경함 (안 제16조)
 - 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제3호, 제112조제1항, 제115조제1항제3호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3.27 ~ 2013. 4.15.
 - (나) 예고결과 : 특기사항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영 제83조"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1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 제5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 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 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6조(세율) <u>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u> <u>제2호</u>
제7조(세율) ① (생 략) ② 페수 또는 산업페기물 등을 배출 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 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7조(세율) ① (생 략) ② <u>「지방세법 시행령」제</u> 83조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제12조(세율)
2. 건축물	2
가. <u>법 제13조제3항</u> 에 따른 골프장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u>법 제13조제5항</u>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u>다.</u> (생 략)	<u>나.</u> (현행 다목과 같음)

3.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 가. 법 제13조제5항-----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4.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 가. **법 제13조제5항-----**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 <삭 제> 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 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제15조(도시지역분)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 -----도시지역분-----분의 1.4로 한다. ______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제16조(납기)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 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납 ----- 10만원 -----

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한다.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개정사항은 2,000천원의 비용절감사항 이므로 비용추 계 제외대상임
- 4. 작성자

재무과장 이재영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 36
•

제출연월일	2013. 5. 13.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일부제한구역의 가구간 거리를 확대조정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거 밀집지역의 가구간의 거리를 확대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주거밀집지역: 가구간의 거리 50m ⇒ 100미터
- 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거리 조정함(안 별표 1)
 - 소·말 : 100m ⇒ 200미터

젖소·사슴·양: 250m ⇒ 300미터

돼지·개·닭·오리: 500m ⇒ 800미터

-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1)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소규모 축산농가 우선 원칙
- 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의 대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대행계약 체결된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분뇨 수집·운반
- 마.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신설함(안 제10조, 별표 2, 제12조)
 - (1) 분뇨 킬로리터 당 16,000원 (운반비 10,000원, 처리시설 사용료 6,000원)
 - (2)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
- 바. 기록관리 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 반입때 마다 물량 확인하여 기록하고 가축분뇨 반입대장 비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나. 예산조치 : 600백만원(2014년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과 합의되었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4. 8. ~ 4. 2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50m"를 "100미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 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 2.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회수한 물량
-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농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퇴비·액비의 공급)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 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 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회수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제한) ①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령, 조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집·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 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u>50m</u> 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 ② (생 략)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u>별표</u> 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별표 1</u>
<신 설>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의 수 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회수한물량
<신 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농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가축분뇨 수지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퇴비·액비의 공급)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의 15

현 행	개 정 안
	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회수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신 설>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제한) ①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령, 조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수집·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공 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 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소·말: 200미터 이내 - 젖소·사슴·양: 300미터 이내 - 돼지·개·닭·오리: 800미터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 1.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미만 시설 포함
-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16,000	10,000	6,000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거창군내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에 있어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거창군 소재의 ○○○업체 대표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거창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계약 사유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 거창군 관내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정수) "을"은「거창군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같은 조례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가축분뇨의 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 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2.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다.

- 3.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을"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3. "을"은 대행업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갑"이 이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이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갑"에게 사전에 알려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 제10조(그 밖에) 1. 이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거 창 군 수 (인)

"을": ○ ○업체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일런	را ح) ا	배 출 자		수집・운반		반입량 (킬로리터)	처리금액	인수자	인계자	비고	
일련 번호	일자	성 명 (농장명)	주	소	성 명 (업체명)	차량번호	(킬로리터)	입량 처리금액 -리터) (원)	11/1	인계사	H 77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위탁 관련 비용
 - 시설운영비(위탁 대행비) 확보
- 거창군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업계
	도비	0					
세출	군비	0	600	620	640	670	2,530
	소계(a)	0	600	620	640	670	2,530
	사용료	0	120	120	120	120	480
세입	지방세	0					
	소계(b)	0	120	120	120	120	480
총비	용(a-b)	0	480	500	520	550	2,050

3. 관련 의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마련
- 축산농가의 적절한 처리로 영세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 가능

작성자 :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 ~ 39

제출	연윝	일일	2013. 5.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된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데크 시설의 이용료 징수와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승대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승대관광지의 새주소 및 면적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2조)
 - (1) 주소 : 위천면 **황산리** 769번지 ⇒ 위천면 **은하리길** 2번지
 - (2) 면적 : 오토캠핑장 신설 **235,479**m³ ⇒ **297,679제곱미터**
- 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군금고 납입시간을 변경함(안 제6조·제7조)
- (현행) 다음날 16시 ⇒ (개정) 다음날 10시
- 다. 유선장 폐지에 따른 유선장이용권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5항)
- 라. 현실에 맞지 않은 관람료 면제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5호)
- 관람료 징수기간인 7.1.~8.31.까지 해당사항이 없음
- 마. 오토캠핑장, 야영장 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정함(안 별표 2)
 - (1) 차양시설 이용료 삭제
 - (2) 일반텐트 : 당일(3천원), 숙박(1일추가시 3천원) ⇒ 숙박(6천원)
- (3) 야영데크 이용료 신설 : 숙박(1만원)
- (4) 오토캠핑장(전기료 포함) 이용료 신설 : 숙박(2만원)
- 바. 야영장 데크 설치 및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3)
- (1) 전액 반환 : 공익상 필요, 군수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취소할 경우
- (2)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 예약취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예약취소, 반환하지 않음: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취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5. 07. ~ 5.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황산리 769번지 일대(235,479㎡)"를 "은하리길 2번지 일대(297,679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제1호·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설"이란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당일"을 "그날"로 "16시"를 "10시"로 한다.

제7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그날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날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관람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을 "사람을"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관람료등"을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

찰에 부칠 수 있다."를 "「거창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3을 신설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하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수승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u>황산리 769번지 일대</u> (235,479㎡)로 한다.	제2조(위치)은하리길 2번지일 대(297,679제곱미터)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u>자를</u>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u>자와</u>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생 략)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u>자를</u> 말한다. 5. ~ 7. (생 략) < <u>신 설〉</u>	
	제6조(관람료징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그날10시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이용료) ① ~ ④ (생 략) ⑤ 유선(보트)장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⑥ 시설이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관람료의 예에 따른다.	10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지 않는다. 1. (생 략)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u>자</u> 3. ~ 4. (생 략) 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 의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 날에 입장하는 유가족	

현 행	개 정 안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②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u>자와</u>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u>자를</u> 방문하는 <u>자</u> , 눈썰매장 이용자 및 「거창군 사이버군 민제도 운영조례」에 따른 사이버거창 군민으로 등록된 <u>자</u> 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③ (생 략)	<u>사람을</u> <u>사람</u>
않는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u>사람은</u> <u>관람료 및 시설이용료</u> (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u>자</u> 2. 술에 만취되어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u>자</u> 3. 고성방가, 집단놀이(캠프파이어)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관람, 이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u>자</u>	사람 2사람 3
 4. 관광지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생 략) 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별표 2] 시설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당 일	숙박(1일)
주차료	소형차	3,000	6,000
十八五	대형차	5,000	10,000
	일반텐트		<u>6,000</u>
야영장 이용료	<u>야영데크</u>		10,000
	오토캠핑장 (전기료포함)		<u>20,000</u>

- 소형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대형차 : 승합차(버스), 화물차(트럭)

[별표 3]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기준
공익상 필요 또는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	5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할 때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기준 시간은 18시로 한다.
- 반환은 7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서식

관 람 권 원부

(전면 : 수승대관광지 전경사진)

일련번호: 구 분 :

요 금 : 워

(뒷면: 수승대약사관람표 및 시설이용 요금표 표시) 발 행 일 :

거창군수

o 구 분 : 어른(개인,단체) 청소년군인(단체), 어린이(단체)

청소년군인(개인), 어린이(개인)

o 규 격 : 130mm×60mm(아트지 100g/m²)

[별지 제2호서식]

주 차 권 서 식

<앞 면>

주차권 원부

주차권 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원

발 행 일 :

거창군수

일련번호 :

구 분 :

요 금 : 원

발 행 일 :

거창군수 (인)

o 구 분 : 이륜차(당일,체류), 승용차(당일, 체류), 버스(당일,체류)

o 규 격 : 130mm×60mm(모조100g/m²)

<뒷 면>

- 1. 이 주차권은 한 차례만 유효함.
- 2. 이 주차장(성수기 임시주차장 포함)이외의 주차장에 주차를 금함
- 3. 차량과 부속용구등 도난사고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4. 당일 주차에서 체류(숙박)주차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차액을 납부하고 주차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서식〕

야영장 이용권 서식

야영장 이용권 원본

일련번호:

구 분:

요 금 : 워

발 행 일 :

요 금 : 발 행 일 :

일련번호:

구 분:

거 창 군 수

거 창 군 수 (인)

야영장 이용권 영수증

o 규 격 : 120mm×60mm(모조100g/m²)

워

야영장 데크 이용권 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원본

야영장 데크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 분:

요 금 : 워

발 행 일 :

일련번호 : 구 분:

요 금 : 워

발 행 일 :

거 창 군 수 (인)

거 창 군 수

o 규 격 : 120mm×60mm(모조100g/m²)

오토캠핑장 이용권 서식

오토캠핑장 이용권 원본

오토캠핑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 분 :

요 금 : 원

발 행 일 :

일련번호: 구 분 :

요 금 : 원

발 행 일 :

거 창 군 수 (인)

거 창 군 수

o 규 격 : 120mm×60mm(모조100g/m²)

「별지 제4호서식〕

썰 매 장 이 용 권

(앞면)

썰매장 이용권 원본

일련번호 : 구 분:

> 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발 행 일 :

거 창 군 수

썰매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

> 요금 :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발 행 일 :

거 창 군 수 (인)

°구분: 어린이(개인, 단체), 청소년·군인(개인, 단체), 어른(개인, 단체)

°규격: 180mm × 60mm(모조 100g/m²)

(영수증 뒷면)

썰매장 이용 주의사항

- 1. 노약자, 유아, 임산부 및 음주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2. 2명 이상 탑승을 금합니다.
- 3.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4.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탈 수 없습니다.
- 5.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